발 행 인 : 서울특별시장
편 집 인 : 공 보 관
731-6111~3

서울시보

제 1925 호 1995. 9. 25.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림	기관의장

◉ 고 시
제 1995-264 호 보호수지정해제 ····· 3

◉ 공 고
제 1995-256 호 적선구역제2지구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위한공람공고 ····· 3
제 1995-257 호 1996년도서울특별시공무원제안모집공고 ····· 7
제 1995-258 호 1996년도시민창안모집공고 ····· 10
제 1995-259 호 자랑스런시민상및공무원상수상대상자추천공고 ····· 13

◉ 구 고 시
제 1995-37 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변경인가(동작) ····· 13
제 1995-35 호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변경결정및지적승인(중구) ····· 14
제 1995-54 호 도시계획사업(공용의청사:서울교원연수원)실시계획
변경인가(서초) ····· 14
제 1995-64 호 도시계획사업(고척동97-8~145-168간도로)실시계획
변경인가(구로) ····· 15

(이면계속)

공람											

◎ 서울특별시
076

제 1995-82 호 도시계획사업(길음동619주변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성북) ····· 15
제 1995-63 호 도시계획사업(신도림중학교진입로개설)실시계획변경인가(구로) ····· 16
제 1995-62 호 도시계획사업(구로구공구상가입번지도로)실시계획인가(구로) ····· 17
제 1995-31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광진) ····· 19

◉ 구 공 고
제 1995-311 호 도시계획시설(도로·공용의청사)결정및변경결정을위한 공람공고(서초) ····· 19
제 1995-194 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은평) ····· 20
제 1995-191 호 주택개량재개발청운제2구역조합설립및사업시행인가를위한 공람공고(종로) ····· 20
제 1995-108 호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등록정지처분공고(금천) ····· 21

◉ 한강관리사업소고시
제 1995-102 호 하천점용허가 ····· 21
제 1995-103 호 하천점용허가 ····· 22
제 1995-104 호 하천점용허가 ····· 22

◉ 공 문 시 행
물품관리전환소요조회 ····· 22

◉ 인 사 발 령 ····· 24

◉ 기 타
정정게재 ····· 24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1995-264호
보호수지정해제

산림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호수 지정을 해제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1995. 9. 25
서 울 특 별 시 장

○ 보호수 해제내역

지정번호	품 격	수종 및 주수	소 재 지	소유자	해제사유
1-3-11-15-35	마을나무	음나무 1주	용산구 용산동5가 19	미8군 제34사령부	고 사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1995-256호
적선구역제2지구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위한공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367호(73. 9. 6)로 재개발구역 지정되고, 건설부고시 제76호(77. 4. 30)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187호(95. 6. 23)로 사업계획결정 및 변경결정된 적선구역제2지구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 인가를 위해 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인가신청 관계서류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사업시행 구역 내의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내 인가 등에 대한 의견서를 공람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1995. 9. 25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사업의 명칭 : 적선구역제2지구재개발사업
나. 시행구역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자동 219 외 30필지(총 31필지)
다. 시행면적 : 1,574.4㎡
라. 시행자의 성명·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685-20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사장 김진욱
마.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685-20
바. 공람사항 : 규약 및 사업시행계획서
사. 공람기간 : 1995. 9. 16~1995. 10. 15 (30일간)
아.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731-635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가. 토 지

(단위 : ㎡)

연번	지번	지목	지적	시행면적			소유자	
				계	대지	공공시설	성명	주소
1	내자동 207-1	대지	37.3	37.3		37.3	도시개발공사	성동구 성수동1가 685-20
2	212-2	〃	64.4	64.4	64.4			
3	212-3	〃	22.7	22.7	22.7			
4	212-4	〃	15.2	15.2	15.2			
5	212-5	〃	15.2	15.2	15.2			
6	212-6	〃	3.8	3.8	3.8			
7	212-7	〃	3.8	3.8	3.8			
8	212-8	〃	3.8	3.8	3.8			
9	213-2	〃	43.3	43.3		43.3		
10	215-3	〃	3.3	3.3	3.3			
11	215-4	〃	129.9	129.9	129.9			
12	215-5	〃	22.8	22.8	22.8			
13	215-6	〃	33.1	33.1	33.1		(주)파고다 면세백화점	종로구 적선동 122-1 (가압류 한국보증보험(주)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 674-163, 가압류 대한보증보험(주) 종로구 연지동 136-74, 경매신청 채종복 종로구 화동 138-12, 근저당권 신한은행(을지로) 중구 태평로2가 120, 지상권 신한은행(을지로) 중구 태평로2가 120, 근저당권 동아상호신용금고 영등포구 양평동4가 156-1, 근저당권 신한은행(을지로) 중구 태평로2가 120, 가압류 강상태 노원구 상계동 639 보람Ⓐ 206-909)
14	215-7	〃	122.0	122.0	122.0			
15	215-8	〃	46.8	46.8	46.8			

연번	지번	지목	지적	시행면적			소유자	
				계	대지	공공시설	성명	주소
16	내자동 216	대지	34.6	34.6		34.6	도시개발공사	성동구 성수1가동 658-20
17	216-1	〃	18.3	18.3	18.3			
18	217	〃	81.2	81.2		81.2		
19	217-1	〃	41.1	41.1	41.1			
20	218-1	〃	45.4	45.4		45.4		
21	218-3	〃	20.7	20.7	20.7			
22	218-4	〃	22.6	22.6	22.6			
23	219	〃	327.3	327.3	327.3		이재후	성북구 정릉동 226-8
24	220-2	〃	78.3	78.3	78.3		도시개발공사	성동구 성수1가동 685-20
25	220-3	〃	67.1	67.1	67.1			
26	221	〃	76.0	76.0	76.0			
27	221-1	〃	11.2	11.2	11.2			
28	221-2	〃	6.6	6.6	6.6		오공근	노원구 공릉동 230 현대빌라 11-1
29	222	〃	56.2	56.2	56.2			
30	235-4	도로	67.5	67.5	67.5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31	적선동 170-4	도로	52.9	52.9		52.9	김광숙 정용근	서대문구 홍은동 24-50 종로구 평창동 326-2
계			1,574.4	1,574.4	1,279.7	294.7		

나. 건 물

(단위 : ㎡)

연번	지번	용도	구조	건물현황					소유자	
				계	지층	1층	2층	3층	주소	성명
1	내자동 207-1	주택	목조와즙	11.27		11.27			종로구 내수동 120	주기남

연번	지번	용도	구조	건물현황					소유자	
				계	지층	1층	2층	3층	주소	성명
2	212-2	주택	목조와즙	65.52		65.52			종로구 내자동 212-2 춘천시 후평동 67-3 주공Ⓐ 119-407 종로구 내자동 212-2 서초구 잠원동 130-17 관악구 봉천동 215-2 마포구 성산동 446 시영Ⓐ 31-1311 서초구 방배동 776-3 궁전Ⓐ 비-506	안일봉 송종숙 송영희 송선희 송경희 송충식 송군식
3	213-2	주택 점포	목조와즙	46.28		26.45	19.83		종로구 내자동 213-2	황영태
4	215-4	주택	연와조 목조와즙	149.52	3.04	74.41	72.07		서초구 서초동 188-1 우성Ⓐ 17-303 (가등기 강남구 압구정동 297 현대Ⓐ 112-601 김영무)	장수길
5	217	주택	목조와즙	62.81		62.81			용산구 이촌동 300-3 렉스Ⓐ 15-102 양천구 신정동 312 목동Ⓐ 915-105 서대문구 홍은동 281 〃 〃	이장균 이성혁 박춘희 이은정 이은지
6	218-1	주택	목조와즙	39.27		39.27			강남구 대치동 452 한보미도맨션 107-605 (92. 12. 17 멸실)	정계성
7	219	주택	목조와즙	111.17		111.17			성북구 정릉동 226-8 (92. 12. 17 멸실)	이재후
8	220-2	점포	목조와즙	70.12		42.22	27.90		서초구 서초동 188-1 우성Ⓐ 17-303 (가등기 강남구 압구정동 297 현대Ⓐ 112-601 김영무)	장수길

연번	지번	용도	구조	전물현황					소유자	
				계	지층	1층	2층	3층	주소	성명
9	내자동 220-3	주택	목조와즙	40.10		40.10			서초구 서초동 188-1 우성Ⓐ 17-303 (가등기 강남구 압구정동 297 현대Ⓐ 112-601 김영무)	장수길
10	221 221-1	주택	철근론크리트조	174.92		65.59	65.59	43.74	강남구 대치동 596 선경Ⓐ 12-1106 (93. 12. 13 멸실)	김금용
11	221-2	주택	목조와즙	47.10	2.66	34.03	10.41		노원구 공릉동 230 현대빌라 11-1 (92. 12. 17 멸실)	오공근
12	201	사무실	목조와즙	72.72	36.36	36.36			종로구 내자동 201 〃 〃 〃 인천시 북구 계산동 988-55 대성빌라 9동 비02호 서대문구 북아현동 238-4	이홍기 이동성 신동호 이정숙 정정자 정선자
계				890.8	42.06	609.2	195.8	43.74		

◉서울특별시공고제1995-257호

1996년도서울특별시공무원제안모집공고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 및 고안을 계발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1996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제안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995. 9. 25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제도의 목적 및 근거
   가. 목적
      (1) 예산의 절감 및 행정능률의 향상
      (2) 시민의 편익증진 및 행정행태의 개선
      (3) 공직사회의 연구분위기 조성 및 공무원의 사기앙양
   나. 근거
      (1) 지방공무원법 제78조(제안제도)
      (2) 서울특별시공무원제안규칙
          ┌ 94. 2. 25
          └ 규칙 제2603호, 전문개정
2. 제안모집기간
   가. 1회 : 95. 10. 1~96. 3. 31

0767

나. 2회 : 96. 4. 1~96. 9. 30

3. 제안자의 자격 및 제안대상

가. 제안자의 자격

(1) 공무원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제출 가능 다만 특수경력직 중 정무직·전문직공무원은 제안자격 없음.

(2)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각자의 업무분담내역 및 제안에 기여한 공로도에 따라 주제안자, 부제안자를 구분하여 공동제안을 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서를 따로 붙여야 함.

(3) 소속국장 또는 사업소장이 추천한 직무제안은 창의적으로 행정을 개선한 기안자 1인에 한하여 제안자격이 있음.

나. 제안대상

(1) 행정능률의 향상 및 예산절감 방안

(2) 세수입 증대방안

(3) 시민 편익증진 방안

(4) 물품관리의 효율화 방안

(5) 유류·전력 등 에너지 절약 방안

(6) 기타 기계, 설비·장비·공구 등의 발명 또는 개선사항

4.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가.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서울특별시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다.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기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

5. 제안의 종류 및 제출방법

가. 제안의 종류

(1) 자유제안 : 시장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제안자가 과제선정을 자유로이 하는 제안

(2) 직무제안 : 직무수행과정에서 창의력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 소속국장 및 사업소장(3급 이상 사업소장을 말한다)이 추천하거나, 자치구 공무원 제안규칙에 의하여 채택된 제안이나 실시 중인 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당해 제안을 채택한 구청장이 추천한 제안

나. 제안의 제출방법

(1) 「자유제안」은 별지 제1호서식을 3부작성 제안자가 우편이나 문서함을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

(2) 「직무제안」은 별지 제2호서식을 3부작성 추천권자인 소속국장, 사업소장(3급 이상 사업소장) 및 구청장이 시장에게 제출. 다만 소속국장 및 사업소장이 추천한 직무제안은 최초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안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도, 사진, 비디오 테이프 등 제안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둘 이상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함.

*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다만, 실물로 제출된 고안품은 일정기간을 정하여 반환할 수 있음.

0768

다. 제출장소
- 자치구(구청장 권한사항) : 기획예산과
- 서울시(시장 권한사항) : 시정개발담당관실

6. 심사 절차 및 채택기준
가. 심사절차
(1) 관계기관 의견조회 : 제안내용과 관련된 관계기관에 의견조회
(2) 제안심사실무위원회 : 15인 이내의 5급공무원으로 구성,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해당여부와 제안심사위원회 상정안건 선정
* 전문위원 : 사계전문가로 구성,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된 제안의 심사, 기채택창안의 실시에 따른 평가
(3) 제안심사위원회 : 4급공무원 및 사계전문가로 구성, 제안채택 및 등급결정, 기채택창안의 실시에 따른 상여금 지급심사 등
나. 심사 및 채택기준
(1) 심사기준 : 창의성, 경제성 또는 능률성, 실용성, 적용범위 계속성, 노력도, 완성도, 기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
(2) 채택기준 : 종합득점순위, 직접적인 경비절감 추정금액, 행정의 현저한 능률성 등을 고려하여 채택등급 결정

7. 시상 및 채택자 특전
가. 시상
(1) 1회 : 96 6월 중
(2) 2회 : 96. 12월 중

나. 창안등급별 부상금 기준

구 분	금 상	은 상	동 상	장려상	노력상
부상금 (1창안당)	250만원이상 500만원이하	150만원이상 250만원미만	50만원이상 150만원미만	30만원미만 50만원미만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

다. 표창훈격 : 채택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상훈법, 정부표창규정, 모범공무원규정 및 서울특별시표창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훈 또는 표창하거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라. 인사상 특전부여 기준

창안등급	인사상특전의 종류	특 전 대 상
금상·은상·동상	의무적 승진조치	○ 7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 ○ 기능직지방공무원 ○ 소방위 이하의 지방소방공무원
	승진에 우선권부여 또는 승급	○ 5급의 일반직지방공무원
	일반승진 시험에의 우선응시	○ 6급의 일반직지방공무원
	특 별 승 급	○ 4급 이상의 일반직지방공무원

창안등급	인사상특전의 종류	특 전 대 상
금상·은상·동상	특 별 승 급	○ 소방경 이상의 지방소방공무원 ○ 특별승진대상자 및 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응시대상자 중 승진 또는 응시혜택을 받지 못한 자
장려상·노력상	특 별 승 급	○ 일반직 지방공무원 ○ 기능직 지방공무원 ○ 지방소방공무원

*비 고 : 1. 승진의 경우 특별승진요건에 해당되거나 창안채택 후 1년 이내에 특별승진요건에 해당되는 자에 한한다.
2. 특별승급은 구청장이 추천한 「직무제안」 이외의 경우에 한한다.

8. 상여금 지급
가. 요건 : 창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거나 세입증대에 막대한 효과를 나타낸 경우
나. 상여금 지급액 : 창안실시결과 예산절감, 세입증대, 행정개선 등 그 효과의 정도에 따라 지방공무원수당규정(대통령령) 제9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9. 창안의 권리 승계
가. 채택제안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의 출원 및 등록권리는 서울특별시가 승계
나. 여하한 경우에도 동 권리를 창안자의 명의로 행사할 수 없음.
10.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가. 시장과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나. 특히 제안제출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을 제작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당해 기관 내에 보유하고 있는 자체시설, 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
11. 기타 행정사항
가. 국가행정사무에 관한 제안은 관보 제13064호(95. 7. 15)를 참고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제안제출
나. 1996년도 제안제도운영지침은 따로 시달하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공무원 제안규칙을 참조하기 바라며, 각 구에서는 본 계획을 참고 자체제안제도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서울특별시공고제1995-258호
1996년도시민창안모집공고

시민의 창안적인 제안을 시정에 반영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참여의 민주적인 봉사행정을 구현하고자 1996년도 시민창안을 서울특별시민창안제도운영규정 제2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995. 9. 25
서 울 특 별 시 장

1. 창안의 모집
가. 모집기간 : 연중 수시
나. 제출자격 : 직장 또는 거주지의 주소가 서울특별시인 자
다.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 시정개발담당관(우편번호 100-744)

0770

라. 제출과제
(1) 자유창안 :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을 제안자가 자유로이 과제를 선정하여 제출한 제안
(2) 추천창안 : 시의성 있는 시책발굴을 위하여 관련부서 및 시 산하기관에서 모집한 제안 중 우수제안으로 채택되었거나 시행결과 현저한 효과를 거둔 제안

마. 제출방법
(1) 자유창안 : 특정한 서식없이 제목, 현행 및 창안사항을 서술하여 직접 또는 우편 등 이용 제출(창안자 주소, 성명, 전화번호 기재)
(2) 추천창안 :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기관장이 제출

바. 제출서류의 반환 : 심사결과 발표 후 10일 이내에 본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함.

2. 창안대상
가. 시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시정분야의 제도개선사항
나. 시정운영의 능률화 방안
다. 서울시 행정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등으로 현저한 예산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항
라. 시세입 증대방안
마. 기타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

3. 창안으로 볼 수 없는 것
가.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추천창안 제외)
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한 것 또는 제안제도 등에 의하여 이미 채택되었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창안의 실시효과는 있으나 막대한 경비소요, 새로운 문제점 발생 등으로 개선효과가 크지 않은 것
마.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4. 접수 : 창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접수증을 교부하며 동일한 내용의 창안이 둘 이상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추천방안은 모집부서 접수일 기준)

5. 창안의 심사(연 2회)
가. 심사 ┌ 제1회 : 96. 5월(95. 10. 1~96. 3. 31 접수분)
└ 제2회 : 96. 11월(96. 4. 1~9. 30 접수분)
나. 심사방법 :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다. 심사기준 : 창의성, 경제성, 효율성, 실용성 및 주민편익 등
라. 심사결과 발표 ┌ 제1회 : 96. 6월
└ 제2회 : 96. 12월

6. 시상 및 부상
가. 채택자 전원 시장표창
나. 시상등급별 부상수여
(1) 금상 : 200만원 (2) 은상 : 100만원
(3) 동상 : 50만원 (4) 장려상 : 10만원
(5) 노력상 : 기념품 지급

7.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정개발담당관(731-6153, 655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771

〈별지 제 1 호 서식〉

시 민 창 안 추 천 서

서울특별시장 귀하

제 안 자	주소		전 화	
	성명		생년월일	
제안자의 공적개요				
추천제안의 내용				
개선효과				
추천기관의 견				

위와 같이 시민창안을 추천합니다.

추천기관명 직위 성명 (인)

0772

◉서울특별시공고제1995-259호

(시민이직접추천하고선정하는)자랑스러운시민상및공무원상수상대상자추천공고

서울특별시에는 시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애쓰는 숨은 일꾼을 시민이 직접 찾아 추천·심사·선정하는 자랑스러운 시민상 및 공무원상을 제정하여 시상하고 있습니다. 평소 여러분 주위에서 남달리 헌신봉사하며 바르게 살아가는 훌륭한 시민과 공무원을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 9. 25

서 울 특 별 시 장

1. 시상예정인원
   - 가. 시민상 대상자 : 6개부문 100명 이내 (지역사회발전·시민화합·사회질서확립·미풍양속·근검절약·환경보호 부문)
   - 나. 공무원상 대상자 : 3개부문 100명 이내(청렴근검·친절봉사·시정발전 부문)
2. 추천대상자
   - 가. 시민상 : 3년 이상 서울특별시에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소재하고 있는 시민 및 단체로서 부문별로 공로가 있는 분 또는 단체
   - 나. 공무원상 : 3년 이상 서울특별시·자치구 및 그 산하기관(투자기관 포함)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부문별로 공로가 있는 자 및 기관
3. 추천방법
   - 가. 추천권자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10인 이상의 시민 또는 정부 및 서울특별시와 그 산하기관에 등록된 시민단체
   - 나. 추천서류
     - 시민 10인 이상 연명 또는 단체에 의한 추천서 1부
     - 공적조서, 공적요약조사서, 자기소개서 각 1부
     - 기타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1부
   - 다. 접수처 : 시민상-주소지 관할구청장(총무과), 공무원상-소속기관장(인사부서)
4. 추천기간 : 95. 9. 22~10. 11(20일간)
5. 공적심사 : 사회저명인사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
6. 시상내용
   - 시 민 상 : 상패와 메달 및 상금 100만원
   - 공무원상 : 상패, 메달, 월 5만원씩 1년간 수당지급 및 인사상 가점부여
7. 수상자발표 및 시상일시 : 수상자 결정후 개별통지
8. 문의처 : 서울특별시 내무국 행정과(731-6227) 또는 각구 총무과

구 고 시

◉동작구고시제1995-37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우리구 관내 숭실대학교 시설 증축을 위한 대지조성 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3조 및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학교)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하였기 같은 법 제23조6항 및 2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5. 9. 25

동 작 구 청 장

가. 사업 시행지 : 동작구 상도동 1-1 외 5필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학교)

다. 사업의 명칭 : 숭실대학교 시설증축을 위한 대지조성공사

라. 사업시행규모

1) 사업시행 면적 : 122,303㎡(도시계획결정 면적)

2) 실시계획인가 내역

○대지조성 공사 : 연면적 16,028.25㎡

--교회 및 박물관 : 16,028.25㎡(중 7,527.77㎡)

마. 사업시행자 주소 : 동작구 상도동 1-1 외 5필, 성명 : 학교법인 숭실재단 이사장 림인식

바.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1) 착수연월일 : 인가일로부터 60일 이내

2) 준공예정일 : 97. 12. 31

사. 위치도 및 평면계획도 : 별첨(생략)

아. 토지소유자 : 학교법인 숭실재단

*관계도서는 동작구청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중구고시제1995-35호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변경결정 및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2-85호(92. 3. 19)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의3, 제8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권한위임규칙 제2657호(94. 12. 20)의 규정에 따라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중구청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5. 9. 25

중 구 청 장

가.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

구 분	시 설 명	위 치	규 모(㎡)	비 고
기 정	전기공급설비	중구 흥인동 13-1	연면적 3,296	변전소(건물지하 3-5층)
변 경	전기공급설비	중구 흥인동 13-1	연면적 3,285	변전소(건물지하 3-5층) (면적감소 : 11㎡)

나. 관계도면 : 중구청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 비치도면과 같음.

◉서초구고시제1995-54호

도시계획사업(공용의청사)실시계획(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사업(공용의청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도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5. 9. 25

서 초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변경없음) : 서초구 방배동 637-2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도시계획사업(공용의청사 : 서울교원연수원)

다.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 대지면적 : 55,175.30㎡
- 건축면적 : 10,361.70㎡
- 건축연면적 : 37,043.19㎡

라. 사업기간(변경없음) : 1988. 6~1997. 12. 31

마. 설계도서(변경물건조서) : 별첨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 서초구 도시정비과 비치조서와 같음.

사. 설계도서 : 서초구 도시정비과에 비치 도서와 같음.

◉구로구고시제1995-64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341호(78. 7. 8)로 시설결정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410호(78. 8. 14)로 지적승인되어 구로구고시 제1992-80호(93. 1. 11)로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 인가한 고척1동~고척국교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6조,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토목과의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5. 9. 25

구 로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97-8~145-168간(변경없음)

나. 사업종류 및 명칭 : 고척1동~고척국교간 도로개설공사(변경없음)

다. 사업규모 : 도로개설 B=8m, L=280m(변경없음)

라. 사업시행자 : 구로구청장(변경없음)

마. 사업시행일 : 인가일로부터 95. 12. 31까지(변경없음)

바. 사용 또는 수용할 물건 : 별첨 물건조서(변경있음)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인 주소, 성명 : 별첨 물건조서(변경없음)

아. 변경사유 : 물건누락

물 건 조 서

일련번호	소재지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소유자	
					성명	주소
1	구로구 고척동 98-37	주택	연와조 및 벽돌/시멘와즙 1층 : 1㎡ 2층 : 1㎡	2㎡	박정희	구로구 고척동 98-37

◉성북구고시제1995-82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349호(78. 9. 29)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2-210호(92. 6. 23)로 재결정되어,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1994-12호(94. 3. 15)로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 인가한 "길음동 619 주변 도로확장공사(2차)"의 일부 변경사항을 도시계획법 제25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6조, 제2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성북구청 토목과와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토목과 920-3405~8, 건설관리과 920-3400~3).

1995. 9. 25

성 북 구 청 장

가. 변경내용 : 물건조서 누락

나. 기타사항은 변경없음.

따로붙임 : 변경물건조서 1부

변경 물건조서

변경전						변경후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면적 (㎡)	소유자 성명	소유자 주소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면적 (㎡)	소유자 성명	소유자 주소	비고
1	길음동 616-2	철대문 1식 담 장 1식		오한평	길음동 616-2	길음동 616-2	담 장 철대문 계 단 베란다	1식 1식	오한평	길음동 616-2	누락

◉구로구고시제1995-63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48호(93. 2. 24)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30호(93. 5. 7)로 지적승인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구로구고시 제1993-69호(93. 12. 15)로 정정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고시 제1995-39호(95. 6. 21)로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 인가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6조, 제27조의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변경인가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토목과와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5. 9. 25

로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419-420간(변경없음)

나. 사업종류 및 명칭 : 신도림중학교 진입로 도로개설공사(변경없음)

다. 사업규모 : 도로개설 B=6m, L=120m (변경없음)

라. 사업시행자 : 구로구청장(변경없음)

마. 사업시행일 : 인가일로부터 2년(변경없음)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별첨 지장물 조서(변경있음)

사.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인 주소, 성명 및 이해관계인 : 별첨조서(변경있음)

따로붙임 지장물 조서 1부

0776

지 장 물 조 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소유자 성명	소유자 주소	변경전 물건의 종류	변경전 구조 및 규격	변경전 수량	변경후 물건의 종류	변경후 구조 및 규격	변경후 수량
1	신도림동 419-4, 420-6	일광기공주식회사	구로구 신도림동 418-3	담 장	적벽돌	48m	담 장	적벽돌	62m
2	신도림동 420-1	이여호	구로구 신도림동 420-1	점 포	슬레이트 시멘블록 유리새시	5㎡	점 포	변경없음	
							화장실	슬레이트 시멘블록	1식
							셔 터	철 제	2식
3	신도림동 420-1	김연희	구로구 신도림동 420-1(신도림새마을금고 구로구 신도림동 435-5)	점 포	슬레이트 시멘블록 유리새시	17㎡	점 포	변경없음	
							셔 터	철 제	2식
4	신도림동 420-1	유승열	구로구 신도림동 420-1(신도림새마을금고 구로구 신도림동 435-5)	점 포	슬레이트 시멘블록 유리새시	7㎡	점 포	변경없음	
							셔 터	철 제	1식
5	신도림동 420-1	강창용	인천 북구 효성동 207-1 뉴서울Ⓐ 301-503 (신도림새마을금고 구로구 신도림동 435-5)	점 포	슬레이트 시멘블록 유리새시	9㎡	점 포	변경없음	
6	신도림동 420-1	이상운	구로구 신도림동 420-1	점 포	슬레이트 시멘블록 유리새시	7㎡	점 포	변경없음	
							셔 터	철 제	2식

◉구로구고시제1995-62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3호(69. 1. 18)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1995-152호(95. 8. 31)로 도시계

회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6조, 제27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을 인가하고자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토목과와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5. 9. 25

구 로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596-6~640-6간

나. 사업종류 및 명칭 : 구로구 공구상가 일번지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규모 : 도로개설 B=8m, L=50m

라. 사업시행자 : 구로구청장

마. 사업시행일 : 인가일로부터 2년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별첨 토지 및 물건조서

사.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인 주소, 성명 및 이해관계인 : 별첨 조서

따로붙임 : 1).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1부

토 지 조 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실제이용상황	소유자		비고(소유권지분)
						성명	주소	
1	구로구 구로동 596-14	대지	9	9	대지	우장규	구로구 구로동 596-4((주)국민은행 중구 남대문로2가 9-1 근저당권)	전부
2	구로구 구로동 593-24	대지	40	40	대지	(주)제일제당	중구 태평로2가 150	107/403
	〃	〃	〃	〃	〃	우장규	구로구 구로동 596-4	3/403
	〃	〃	〃	〃	〃	경경춘	구로구 구로동 596-24	13/403
	〃	〃	〃	〃	〃	성의제	구로구 구로동 596-13	21/403
	〃	〃	〃	〃	〃	조용환	구로구 구로동 597(정두현 은평구 구산동 26-45 근저당권, 유기원 동대문구 장안동 331-13 근저당권)	63/403
	〃	〃	〃	〃	〃	김종구	경기 평택군 진위면 봉남리 198(구로본동새마을금고 구로구 구로본동 486-53 근저당권)	162/403
	〃	〃	〃	〃	〃	최은식	강남구 일원동 690-2 현대Ⓐ 31-303	34/403 중 5/10
	〃	〃	〃	〃	〃	최영식	영등포구 선길동 4518 우성Ⓐ 207-805	34/403 중 5/10

물 건 조 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 종류	구조및 규 격	수량	실제이용상황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구로구 구로동 596-14	주택	목조와즙	26㎡	주택	우장규	구로구 구로동 596-4 (근저당권 (주)국민은행 중구 남대문로2가 9-1)
	〃	장독대	불록벽돌	5㎡	장독	〃	
	〃	화장실 및 창고	불록벽돌	11㎡	화장실 및 창고	〃	
	〃	주택	목조와즙	4㎡	주택	〃	
	〃	담장	불록벽돌	H=2.0m L=33m	담장	〃	
2	구로구 구로동 593-24	주택	목조와즙	48㎡	주택	이종철	구로구 구로동 593-13

◉광진구고시제1995-31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3조의11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5. 9. 25

광 진 구 청 장

1. 사업명 : 민영주택 건설사업
2. 사업주체 : 강호연립재건축주택조합
   조합장 김응태
3. 민영주택 건설사업 개요
   가. 위치 : 서울 광진구 중곡동 590-5 외 3필지 -
   나. 부지면적 : 2,292.00㎡
   다. 건축연면적 : 10,728.13㎡
   라. 규모 : 아파트 23층 1개동 8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시행기간 : 95.8~98.6
5.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의제사항 : 건축법 제8조에 의한 허가

구 공 고

◉서초구공고제1995-311호

도시계획시설(도로·공용의청사)결정및 변경결정을위한공람공고

1. 우리 구 관내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용의청사) 결정 및 변경결정 입안코자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관계도서는 아래장소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 9. 25

서 초 구 청 장

0779

가. 공람장소 : 서초구 도시정비과(570-6385~7)

나. 공람기간 : 1995. 9. 19~1995. 10. 3 (14일간)

다.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입안 조서

구 분	등급	유별	폭원(m)	연장(m)	시 점	종 점	비 고
신 설	소로	1류	10	860	내곡동 1-1527	내곡동 308-3	

라. 도시계획시설(공용의 청사) 변경결정 입안조서

구 분	시 설 명	위 치	면적(㎡)	비 고
기 정	공용의 청사	서초구 내곡동 산 13-1 일대	577,369	추가지정 (증 19,581㎡)
변 경	〃		596,950	

마. 도면(별첨) : 생략

◉은평구공고제1995-194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

건설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전문건설업의 양도를 인가하였기에 동법시행령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1995. 9. 25

은 평 구 청 장

인가 일자	업 종 및 면 허 번 호	양 도 자			양 수 자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상 호	대표자	소재지
95. 9. 16	철콘 : 92-서울10-166	건화철근공업(주)	김 호	은평구 증산동 233-15	진항건설(주)	진영추	마포구 마포동 350 강변한신코아 1808

◉종로구공고제1995-191호

주택개량재개발청운제2구역조합설립및 사업시행인가를위한공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1993-278호(93. 8. 6)로 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24(95. 1. 23)로 사업계획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134호(95. 5. 15)로 사업계획 변경 결정된 주택개량재개발 청운2구역 토지 등의 소유자로부터 주택개량재개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재개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주택개량재개발 청운제2구역 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와 기타 당해지구 재개발사업의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95. 9. 25

종 로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1995. 9. 20~1995. 10. 20 (30일간)

나. 공람장소 : 종로구청 주택과 및 재개발추진위원회 사무소(종로구 청운동 57-8)

다. 의견서 제출장소 : 종로구청 주택과

라. 인가신청의 요지

1) 사업의 명칭 : 청운2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

2) 시행구역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6-8 등 51필지

3) 시행면적 : 5,808.3㎡

4) 시행기간 : 인가일로부터 36개월

5) 신청인 : 청운2구역 주택개량재개발추진위원회 대표 이규봉

6) 시행계획 : 아파트, 4개동, 6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1개동

7) 공람내용 : 정관 및 사업시행계획 관련 도서

◉금천구공고제1995-108호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등록 정지처분공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6조제3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을 영업정지하였기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1995. 9. 25

금 천 구 청 장

행 정 처 분 업 소

등록번호	업 소 명	대표자	소 재 지	행정처분사유	청문여부	행정처분 내 역
37	동광설비	이점수	시흥본동 896	선임자(불명식) 교육 미필	참석	영업정지 3월 (95. 9. 18~12. 17)
38	미성설비	라석균	독산3동 888-14	기술인력미달 (2종1호)	불참	영업정지 3월 (95. 9. 18~12. 17)
121	신속종합설비	신용호	시흥본동 848-22	기술인력미달 (2종3호)	참석	영업정지 2월 (95. 9. 18~11. 17)

한강관리사업소고시

◉한강관리사업소고시 제1995-10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을 허가하였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1995. 9. 25

한강관리사업소장

0781

허가 연월일	운항 허가척수	운항 구간	허가기간	운항목적	허가를 받은 자	
					주 소	성 명
95. 9. 15	부선2척	한강	1995. 9. 15~ 1996. 12. 31	지하철 건설을 위한 선박운항	서울시 중구 남창동 9-1	삼부토건(주) 조남원

◉한강관리사업소고시
제1995-10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을 허가하였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1995. 9. 25
한강관리사업소장

허가 연월일	운항 허가척수	운항 구간	허가기간	운항목적	허가를 받은 자	
					주 소	성 명
95. 9. 15	선박1척 부선1척	한강(성산대교 ~행주대교)	1995. 9. 15~ 1998. 8. 31	가양대교 건설공사를 위한 선박운항	—	서울시종합 건설본부장

◉한강관리사업소고시
제1995-10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을 허가하였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1995. 9. 25
한강관리사업소장

허가 연월일	점용위치	지목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허가 받은 자	
						주 소	성 명
95. 8. 14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유동 140-2, 영등포구 여의도동 85-1	하천	106.68	선착장 오수처리를 위한 관로매설	95. 5. 19 ~2000. 5. 18.	영등포구 여의도동 85-1	세모유람선주식회사 대표 박명칠

공 문 시 행

문서번호 : 재산41621-2136
시행일자 : 95. 9. 25
수신 : 전기관
제목 : 물품관리전환소요조회

1. 재산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래 물품에 관하여 시물품관리조례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물품소요를 조회하오니 필요한 기관에서는 95. 10. 5까지 관리전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기일까지 요청이 없을 시에는 해당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습니다.

1995. 9. 25

서 울 특 별 시 장

물품 관리전환 대상품목 조서

정부물품 분류번호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장부가격 (단위 : 천원)	취득일	상 태	보관부서
3446-006	함 마	소형	개	1	1	70. 8	폐품	재산관리과
3610-237	전자복사기	NP-300Z	대	1	2,949	90. 2	〃	
4140-001	선 풍 기	FD-356	〃	2	72	84. 8.	〃	
7230-	방 첩 함	목재	개	1	10	84이전	〃	
6720-001	카 메 라	야시카GX	대	1	95	76.12	〃	
7730-003	텔 레 비 전	금성칼라 14인치	〃	1	200	89. 2	요정비품	
7520-062	권 척	10㎡, 5㎡	개	각 1	5	84이전	폐품	
7520-007	펀 치	수동(압력)	〃	1	2	〃	〃	
6230-005	회 중 전 등	6V용	〃	1	1	〃	〃	
7110-006	흑 판	소형	〃	2	4	〃	〃	
7430-005	체크라이타		〃	1	3	84. 12	〃	
7430-009	전동타자기	GTS-7500	대	1	552	90. 7	요정비품	
7440-20	프 린 터	QP 6600	〃	1	840	90. 6	〃	
〃	〃	〃	〃	1	995	88. 8	〃	
7430-300	퍼스널컴퓨터	XT OMNI 6600	〃	1	1,056	90. 6	〃	
〃	〃	XT OMNI 88	〃	1	641	92. 12	〃	
〃	〃	〃	〃	1	1,056	91.9	〃	

인 사 발 령

기능직공무원 휴직

발령 제525호(1995. 9. 15)

서울대공원 지방운전원(10등급) 정재균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거 휴직

서 울 특 별 시 장

기능직공무원 면직

발령 제526호(1995. 9. 16)

중랑하수처리사업소 지방기계원(10등급) 정대숙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소방본부 지방사무보조원(타자10등급) 차복자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소방본부 지방사무보조원(타자10등급) 권덕경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 지방전기원(10등급) 송재석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청소사업본부 지방기계원(10등급) 봉덕수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서 울 특 별 시 장

토목직공무원 신규임용

발령 제527호(1995. 9. 18)

신규 노유진 지방토목주사보시보에 임함, 제3호봉을 급함, 지하철건설본부 근무를 명함

신규 박찬규 지방토목주사보시보에 임함, 제2호봉을 급함, 지하철건설본부 근무를 명함

신규 김동철 지방토목주사보시보에 임함, 제3호봉을 급함, 종합건설본부 근무를 명함

서 울 특 별 시 장

기능직공무원 면직

발령 제528호(1995. 9. 18)

상수도사업본부 지방조무원(검침10등급) 변양수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상수도사업본부 지방조무원(검침10등급) 윤정근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서 울 특 별 시 장

기능직공무원 전보

발령 제529호(1995. 9. 19)

시의회사무처 지방사무보조원(필기9등급) 박정임 상수도사업본부 발령

서 울 특 별 시 장

별정직공무원 신규임용

발령 제530호(1995. 9. 18)

신규 주병국 지방별정직8급상당(비서)에 임함, 제3호봉을 급함, 시의회사무처 근무를 명함

서 울 특 별 시 장

기 타

○정정게재

시보 제1922호(95. 9. 15)에 게재된 출석통지서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1995. 9. 25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위원장

관 련 내 용	당 초 사 항	정 정 사 항
p54 상단에서 8행	⑥ 출석일시 1995년 9월 29일 14 : 00	⑥ 출석일시 1995년 10월 13일 14 : 00
p55 상단에서 7행	⑥ 출석일시 1995년 9월 29일 14 : 00	⑥ 출석일시 1995년 10월 13일 14 : 00